

「언제나 청춘 정기예금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“언제나 청춘 정기예금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거치식예금 약관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 및 『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60세이상의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.

제 3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.

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며, 최고 5천만원 이내입니다.

제 6 조 재예치

- ① 이 예금은 가입일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, 만기일에 원금 또는 세후 원리금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하며, 최대2회까지 재예치가 가능합니다.
- ② 재예치일은 최초 예금 신규일을 해당일로 하고,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 또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
- ③ 재예치시 세후 원리금이 고객이 지정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할 경우, 일반계좌로 재예치합니다.
- ④ 압류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의로 재예치 자동이체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이 예금은 재예치할 수 없습니다.
- ⑤ 재예치 시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 7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단, 만기일이 휴일인^(주1)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 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.
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제1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8 조 우대금리

이 예금은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하여 4대 공적연금 입금실적^(주2)을 보유한 경우 연0.2%의 우대금리를 제7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. (월별 1회 이체)
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9 조 일부해지

-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동안 2회까지 가능하며, 일부해지금액에 대하여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.

제 10 조 보험가입서비스

이 예금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가입서비스(보험상품명 : 단체안심상해 보험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① 보험가입대상 : 신규시 보험가입 및 선택 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
- ② 보장기간 : 보험 개시일은 예금 신규일(재예치일) 다음날로 하며,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됩니다.
단, 보장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예금의 중도해지 시에는 보험가입 서비스 제공중단됩니다.
- ③ 보험내용

구분	담보내용	보험가입금액	보장내용
피싱	보이스피싱	1천만원	보이스피싱(전화금융사기)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금전손해액의 70%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다만, 사고가 발생한 경우 [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]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함
피싱	메신저피싱	1천만원	메신저피싱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, 보험가입금액 한도로

			실제금전적손해액 지급
교통	대중교통 상해사망	5천만원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

④ 유의사항

1. 이 예금의 예금주 본인에게 보험가입서비스가 제공되며, 명의변경으로 인한 예금주 변경시 보험 가입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2. 이 예금의 중도해지시,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보험서비스가 중단됩니다.
3.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부담하며, 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미경과 해지환급금은 하나은행으로 귀속됩니다.
4. 보험담보위험, 보험금지급 등 위 보험가입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보험금 청구 시 (주)하나손해보험 보상센터로(02-6670-8833)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주1) 휴일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 등 은행의 비영업일

(주2) 4대 공적연금 인정기준 : 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 연금 (단, 기초노령연금 제외)

※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<부칙 (1)>

본 약관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